

보도	2026.10.13.(화) 조간	배포	2026.10.12.(월)	
담당부서	자산운용감독국 펀드심사2팀	책임자	팀 장	김호빈 (02-3145-6752)
		담당자	선 임	장민석 (02-3145-6753)

금융감독원, PEF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실시

- PEF 운용사들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·평가하고
개선사항을 지도함으로써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및 문화의 정착을 유도 -

1 실시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그 간 기관전용 사모펀드(이하 'PEF')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자율규제 역량 강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
- '26.1월, 「PEF 운용사 CEO 간담회」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,
- '26.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PEF 운용사들과 함께 「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」을 발표하고
- 회사별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지속 지도하여 왔음

➡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,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함으로써 자율규제 체계 및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

「PEF 운용사 표준내부통제기준」 주요 내용('26.3월 발표)

◆ 「표준내부통제기준」은 GP의 내부통제조직,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, 준수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

① 내부통제 조직 구축

-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
- 준법감시담당자 자격 및 역할
-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

② 업무수행시 준수 사항

- 정보교류차단 의무화
- 이해상충방지 체계 마련
-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

③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

- 내부고발제도 운영
-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
- 교육 및 준법감시 서약

2 점검 세부계획(안)

- **(점검 개요)** '26.10월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, 모범사례 전파 및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
- **(점검 대상)**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개*
 - *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.5%를 차지
 - 주요 대형 GP를 중심으로 선별하되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점검필요 사항 등이 포착된 회사와 중·소형사도 균형 있게 안분
- **(점검 방법 등)**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계획*
 - * (예) 준법감시인의 형식적 임명 뿐 아니라, 자격(경력 등), 지위 등에서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
 -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,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
 -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점검 실효성을 제고
- **(중점점검 분야)** 내부통제 관련 조직·체계, 준법감시인 운영, 정보교류 관리, 이해상충 평가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총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되
 - 관련 교육실시 현황,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태 등 조직 내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 등의 노력도 함께 점검할 계획

PEF 운용사 내부통제 중점 점검 분야(예시)

주요 분야	세부 내용
① 내부통제 관련 조직·체계	·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,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역할·책임 등 ·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·처리 절차 등
② 준법감시인 운영	· 임명 절차의 적정성, 경력, 직위 및 보상 체계 등 · 준법감시인의 역할·책임(R & R), 업무수행 실적 등
③ 정보교류 관리	· 부서(팀)간 적정한 공간 분리,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여부 등 · 정보교류기준 및 예외적 공유시 관리 절차 마련 여부, 정보 외부유출 관리 등
④ 이해상충 평가	· 이해상충 파악·평가 절차 및 보고체계 마련 여부 등 · 이해상충 발견시 대응 등 예방 및 처리 방안 등
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	· 계좌개설 신고(자기명의 1계좌 원칙),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 · 직원 교육, 내부신고제도 운영 현황 등

3 기대 효과

- 점검 결과에 따른 모범·미흡사례 공유, 회사별 개선 지도 등을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함으로써
 -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의 재발을 예방하는 한편
 -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 또한,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

4 향후 계획

- 점검 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충실히 반영하고
 - 향후, 점검대상 확대,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·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·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

제1편 총칙

§1 목적	· 법령 준수 및 투자자이익 보호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 수립
§2 적용범위	·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의 GP 관련 업무 전반에 적용
§3 용어	· 내부통제, 내부통제체계, 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용어 정의
§4 세부지침 등의 제정	· 기준에 없는 사항은 별도 사규나 지침으로 운영 가능
§5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	·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

제2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

§6 이사회	· 내부통제기준 제·개정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최종 심의·의결
§7 대표이사	· 내부통제 운영 총괄 책임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수행
§8 준법감시담당자	·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점검 및 조사
§9 임직원	· 관련 법규 숙지·준수 및 위반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
§10 내부통제기준의 제·개정 등	· 준법감시담당자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

제3편 준법감시담당자 및 내부통제체계 운영

§11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면	· 대표이사가 임면하며 2년 이상의 임기와 독립성 보장
§12 준법감시담당자의 권한 및 의무	· 법규 준수 점검, 자료 요구, 위반 행위 보고 및 교육
§13 준법감시담당자의 독립성 확보	· 영업 관련 업무 겸직 금지 등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
§14 준법감시체계의 구축	·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·부당행위의 사전예방
§15 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	· 임직원의 준법서약서 징구 및 정기적인 준법 교육 실시
§16 임직원에게 대한 지원 및 자문	· 임직원의 법규 관련 의문에 대한 상시 자문 절차 마련
§17 보고의무	· 위반 의심 사례나 감독당국 정보 요구 시 지체없이 보고
§18 내부고발제도	· 제보자 보호 및 포상을 포함한 내부고발제도 운영
§19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	· 주기적 점검을 실시, 위반 시 제재 및 제도 개선

제4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

§20 업무 일반원칙	· 자기거래 금지, 부당권유 금지 등 금지 행위 규정
§21 이익의 우선순위	· 투자자와 펀드의 이익을 회사·임직원 이익보다 우선시
§22 선관주의의무	·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직무 수행
§23 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	· 부당한 사익 추구 및 회사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
§24 이해상충의 파악·평가 및 관리 등	· 이해상충 우려 시 즉시 보고하고 관리 지시에 따름
§25 투자자간 이해상충	· 특정 투자자 우대 금지 및 운용 관여 차단
§26 PEF와 투자대상기업 간 이해상충	· 투자기업 경영진과 펀드 간 이해상충 감독
§27 투자금 조성 단계	· 원금·이익 보장 약속을 통한 부당 권유 금지
§28 투자대상기업 선정 및 투자단계	· 규약 준수 및 최적의 기업 선정, 관련 정보 제공
§29 투자대상기업 관리 및 운영단계	· 투자 계약 준수 여부 감독 및 사적 거래 시 충돌 관리
§30 투자금 회수 및 분배단계	· 합리적 회수 결정 및 계정 간 형평성 유지
§31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	·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의 부서 간 교류 차단
§32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	· 정보를 정해진 업무 범위 외 제3자 유출 금지
§33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제한	·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및 계열사 증권 취득 제한
§34 겸영업무 시 내부통제	· 금융투자업 겸영 시 업무 부문 간 정보 차단 조치
§35 기본원칙	·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와 관련한 기본준칙 규정
§36 계좌개설 및 신고	· 임직원 주식거래시 자기 명의 계좌개설 및 신고의무 규정
§37 매매거래 내역 보고	·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, 미성년 자녀의 주식거래 보고 의무
§38 비밀유지 및 사적유용금지	·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의 유출 및 사적 이용 금지
§39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	· 시세조종 등 금지 및 위반 혐의 시 당국 신고
§40 부당한 금품 및 향응수수, 부정청탁의 금지	· 청탁금지법 준수 및 과도한 금품·향응 수수 금지

제5편 기타

§41 기타	· 국내법 적용 및 투자자에게 불리한 해석 금지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**(개요)** PEF(Private Equity Fund)*는 경영권 참여, 기업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('04년 도입)

* 경영권 참여 없이 금융상품·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사모펀드(헤지펀드)와 구분

- **(종류)** 일반, 기업재무안정, 창업·벤처전문으로 구분

-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: 재무구조개선기업*에 투자·운용

* 부실징후기업,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

- 창업·벤처전문 사모펀드 : 창업·벤처기업, 기술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·운용

- **(운영형태)** 무한책임사원(GP)과 유한책임사원(LP)이 공동 출자하는 합자회사* 형태로 사모펀드 설립·운영

* 주식회사는 모든 주주가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(유한책임)을 지는 반면, 합자회사는 회사의 전체 채무에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(회사운영)

- 무한책임사원은 PEF 운용사*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, 유한책임사원(예: 연기금, 금융회사 등)은 투자자로 참여

* 투자 관련 의사결정, 집행 및 회수 등 펀드 운용 전반에 관한 업무

- **(규율체계)** 진입·운용규제를 최소화하되 투자자를 기관으로 제한

- **(진입규제)** GP는 등록제로 운영중이며, 자본금(1억원)·인적요건(투자운용인력 2인) 등 최소화(PEF는 설립 후 2주내 사후보고)

- **(투자자)** 정부, 금융회사,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제한*

* cf. 일반사모펀드: 일반투자자(3억원 이상) 및 전문투자자 참여 가능

- **(행위규제)**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보호(설명 의무, 적합성 원칙 등), 분산투자 의무 및 의결권행사 제한(10% 초과분) 미적용 등